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○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이 개정(2015.7.29)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가스수급을 원활히 하고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제정의 목적 (안 제1조)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○ 조례의 적용범위 및 세부 허가기준 (안 제3조, 제4조)
○ 위해방지를 위한 규정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조 및 제6조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기타

1) 규제심사 :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개최 결과 안 제4조(허가기준)에 대해 원안 가결(2015.10.8.)
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3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2015.10.8.~10.28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“액화석유가스사업”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보호시설”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.
3. “도로”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. 다만,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·법인의 변경·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허가기준)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(위해방지) 성주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【별표】

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(제4조 관련)

구 분		세부 허가기준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	자격기준	1. 대표자는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법인일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
	대상지역	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.
	시설기준	1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,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·충전장소는 그 외면(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·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)으로부터 보호시설(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)까지의 안전거리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[별표4] 제1호가목1)다)부터 마)까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 2.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2m(실제측량)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